

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7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8. 1.

발 의 자 : 정혜영 의원

1. 제안 이유

- 가.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시설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며, 체육시설의 사용 신청자가 2인 이상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행사에 ‘장애인,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체육동호회의 행사·경기’를 추가하여 우선하여 허가하고자 함.
- 나.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의 30% 감면 대상에 ‘다문화가족’을 추가로 규정하여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조항 신설(안 제4조의2)
- 나.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‘장애인,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체육동호회의 행사·경기’ 추가(안 제6조제3항)
- 다. 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에 ‘다문화가족’ 추가(안 제11조제1항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안전관리 등)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매년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, 시설물 안전에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체육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 안전교육
2.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·배포
3.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
4. 그 밖에 시장이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6호(중전의 제5호) 중 “제4호”를 “제5호”로 한다.

5. 장애인, 장애인단체, 장애인체육동호회의 행사·경기(사용자가 경합할 경우에는 「장애인복지법」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자가 우선한다)

제11조제1항제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 따른 다문화가족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③ 제1항에 의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자가 2인 이상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그 밖의 행사 등

④ (생략)

제11조(사용료 등의 감면·할증)

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의 각종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4. 100분의 30 감면

가. ~ 라. (생략)

<신설>

5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③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장애인, 장애인단체,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행사·경기(사용자가 경합할 경우에는 「장애인복지법」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자가 우선한다)

6. ----- 제5호-----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사용료 등의 감면·할증)

①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
마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 따른 다문화가족

5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